

## **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농가 이력관리요령**

■ 송아지가 태어나거나, 기르던 소를 팔거나, 샀을 경우에는 위탁기관(관할지역 축협 등)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한우 뿐만아니라 젖소, 육우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- 신고할 때는 서면, 구술, 전화 등 방법으로 하세요.

■ 신고 후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■ 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하고, 전산등록한 소만 거래하거나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합니다.

- 귀표는 국가공식 귀표(KOR+12자리)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
- 젖소 농가 등에서 기부착한 자체부착 귀표나 관리번호가 없는 민이표는 도축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위탁기관에 연락하여 정부에서 배부한 귀표를 다시 부착하셔야 합니다.
- 도축 등을 위한 출하의 경우 사전에 휴대폰(6626+인터넷접속기)을 이용하여 해당 소가 귀표장착 및 전산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.

■ 우시장에서 소를 거래(사거나 팔 경우)한 후에도 반드시 위탁기관에 전화, 서면 등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소의 개체식별번호, 성명, 주민번호, 주소 및 상대방 인적사항 등

■ 출생 등 신고 후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